

##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 재안이유

-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함.

 주요골자

-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중 최초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
  -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: 신체장애 1급 내지 14급
  - 고엽제후유의증환자 : 질병구분에 따라 고도·중등도·경도장에 해당자

 의안전문 : 따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##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”을 “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,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”으로, “국가유공자”를 각각 “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국가유공자등에우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 하는 자가 본인·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·비속,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형제·자매의 명의로 등록(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 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 는 경우에 한한다)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 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(당해 자동차를 매 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. 다만 국가유 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·혼인·해외이민·운전면허취소 기타 이 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 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.</p>	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국가유공자등에우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 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에우대하 는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 증환자-----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회운동부 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-----, 국가유공 자·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----- (국가유공자·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·고엽제후 유의증환자-----국가유공자·광주민주 회운동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-----)-----)</p>
1.~4. (생략)	1.~4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▣ 지방세법

제7조(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)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(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)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.

### ▣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
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·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제4조(적용대상자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(이하 "광주민주유공자"라 한다)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.

#### 1. (생략)

2.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: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

## 3. (생략)

### ▣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

제4조(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애등급) 법 제4조제2호에서 "장애등급"이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을 말한다.

### ▣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
제7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) ①~⑥ (생략)

⑦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(이하생략)

### ▣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
제9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등)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01.1.8>

②삭제 <2000.2.23>

③삭제 <2001.1.8>

④~⑤ (생략)